

2025년도 소재·부품·장비 민간투자활성화 유공 포상 공고

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에서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기술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, 관련 종사자의 투자활동 의지를 고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, 민간투자 활성화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4일

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장

1. 자격요건 및 포상 내용

신청(추천)자격

- 민간투자 활동을 통해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, 아래 「추천제한」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포상 자격 요건

| 분야 | 자격요건*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소부장 기술투자 (개인) | ·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유망기업 발굴 및 활발한 투자활동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 및 시장개척 등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|

* 세부 자격요건은 [붙임1] 참조

포상 규모

- (훈격(수량))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회장표창(5점)

* 접수 상황(내용)에 따라 훈격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

□ 추천제한

- 「상훈법」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동법 「시행령」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수여 금지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* 임원 :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

-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(사업상 등기부등본, 금융감독원 ‘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 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’을 통해 확인
-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-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- (고발·과징금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-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(시정명령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- * 다만,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 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* 포상 추천일 이전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 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 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
○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-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< (참고) 관련 조회 기관 >

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

- 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 - 202 - 7693)
 - * 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
- 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27)
 - *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범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
- 임금체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 - 202 - 7537)
 - * 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

-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

- NTIS(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) 사이트(www.ntis.go.kr)에 접속, 사업과제 → 제재정보란에서 확인(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)

○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, ‘부적정’, ‘한정’인 상장회사,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 및 그 대표자와 임원

○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
2.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

□ 포상추진 일정

- 「2025년도 회원사 정보교류회」(25. 12. 4(목))에서 시상

[추진 일정(안)]

| 구분 | 신청·접수 | 서류 심사 | 포상심의 위원회 | 심의결과 보고 | 결과 확정 및 통보 | 유공 포상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일정 | ~ 11/14(금), 17:00 | 11/18(화) | 11/19(수) | 11/21(금) | 11/24(월) | 12/4(목) |

*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주요 심사기준(안)

| 분야 | 항목(배점) | 평가기준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소부장 기술투자 | 투자역량 및 전문성 (30) | - 투자 관련 업무종사 기간 - 업무능력 및 관련 수상 경험 |
| | 투자 업무 수행 실적 (30) | - 소부장 기업 투자·회수 등 관련 실적에 대한 주요 사례 : 추진절차, 주요내용, 투자·회수 규모, 신청인의 역할(기여도) 등 - 소부장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/협력 사례 : 추진절차, 주요내용, 추진결과, 신청인의 역할(기여도) 등 |
| | 파급효과 (30) | - 피투자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제고·기술사업화·시장개척 등 기업의 성과 사례 : 이를 통한 기술·경제·사회적 파급효과 등 |
| | 기타 (10) | - 향후 비전 및 계획 |

*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

3. 신청 및 접수 방법

□ 신청 기간

- 공고 게시일 : ~ 2025. 11. 14(금), 17:00

□ 제출 서류 : [붙임2] 제출 서류 목록 참고

-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
- 포상 심의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
 - *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

□ 제출 방법

- 날인된 신청서를 포함한 '모든 제출서류'의 ①스캔파일(PDF) 및 ②편집 가능한 한글파일(HWP)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
 - (접수처) ujin@kitia.or.kr
- (문의처)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
 - 설유진 대리(Tel. 02-6000-7948 / E-mail : ujin@kitia.or.kr)

※ 붙임 1. 세부 자격 요건.

2. 부문별 제출 서류 목록 및 양식. 끝.